

안양시 고시 제 2026-103호

안양시 고시 제2009-125호(2009.12.2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6-98호(2026.05.22.)로 정비계획(변경)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9-55호(2019.3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6-62호(2026.04.0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의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부분준공(정비기반시설 제외)인가 하고,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2026. 05. 28.

안 양 시



화창지구 재개발사업 건축물 부분준공인가 고시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화창지구 재개발사업
2. 정비사업의 위치 :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
3. 정비사업의 면적 : 22,670.2m²
4. 사업시행자
 - 성 명 : 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
 - 주 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59, 3층
5. 공사 착공일 : 2023. 07. 04.
6. 부분 준공 인가일 : 2026. 05. 28. (※정비기반시설 제외)

7. 준공인가 내역

가. 건축물

구 분	동수 / 세대수	대지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 수
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	5개동 / 483세대	17,290.80	70,536.61	3,722.85	21.53	242.14	지3층 / 26층

나. 토 지

구 분	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	22,670.2	100.0	
대 지	소 계	18,929.3	83.5	
	공동주택	17,319.3	76.4	금회 준공
	종교시설	1,610	7.1	추후 준공 예정
정비기반 시설	소 계	3,740.9	16.5	
	도 로	1,863.1	8.2	
	공 원	1,686.4	7.5	
	공공공지	191.4	0.8	

8. 의제처리 사항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5조에 따라 인·허가 등에 따른 부분준공인가·사용검사·사용승인 등.
 끝.